



원격수업 운영규칙

규정번호	3-3-13
제정일자	2001.03.02.
개정일자	2020.09.01.
개정번호	Ver.8
총페이지	3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교수·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(이하 “원격수업”이라 한다.)의 운영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09.01.>

제2조 (교육대상자의 정의) 원격수업은 재학생 및 총장이 허락한 자가 수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9.01.>

제3조 (원격수업 교과목)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중간·기말 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·학습 활동의 70%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. <개정 2020.09.01.>

제4조 (수강신청 및 학점의 인정) ① <삭제 2020.09.01.>

② 전문학사과정 재학생이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2년제 과정의 경우는 총 15학점, 3년제는 총 22학점까지로 제한한다. 단, 외국인유학생은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7.03.01.> <개정 2020.03.01.> <개정 2020.09.01.>

③ 편입학생이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2년제 과정의 경우는 총 8학점, 3년제는 총 12학점까지로 제한한다. <신설 2020.03.01.>

④ <삭제 2020.09.01.>

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난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한 원격수업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. <신설 2020.09.01.>

제5조 (강의계획서 작성 및 게시) ①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는 반드시 수업 개요 및 주별 강의계획을 명시한 강의계획서를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03.01.> <개정 2020.09.01.>

② 강좌개설 시 교과분류는 인터넷강의로 입력한다. <개정 2017.03.01.> <개정 2020.09.01.>

③ 강좌 담당교수는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협의하여 수업 게시일 1주일 전까지 원격수업 교육 프로그램을 원격수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03.01.> <개정 2020.09.01.>

제6조 (강의평가) 이 규칙에 의해 개설되는 모든 강좌에 대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한다.

제7조 (성적 평가방법) 원격수업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“학업성적 처리지침” 제2조에 따른다. <개정 2020.09.01.>

제8조 (수업관리) ① 수업은 원칙적으로 원격수업시스템으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실시간 화상회의, 대면출석, 또는 과제수행중심 방식의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. <개정

2020.09.01.>

- ② 출석은 출석·결석 처리가 확인되는 원격수업시스템을 통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0.09.01.>
- ③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에 의한 수업 또는 출석수업의 경우에는 호명에 의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9.01.>
- ④ 국가적 재난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총장의 결재를 받아 SNS 참여, 과제물 제출 등을 통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0.09.01.>

제9조 (수강 인원의 제한) 필요한 경우 강좌별로 수강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9.01.>

제10조 (시스템 이용 제한)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업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시스템의 인증을 거쳐야만 원격수업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. <개정 2020.09.01.>

제11조 (등록생 확인) 원격수업 수강생은 필요시 인적사항과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0.09.01.>

제12조 (원격교육운영지원) ① 원격수업시스템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그 운영을 관리한다. <개정 2017.03.01.> <개정 2020.09.01.>

②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원들의 원격교육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. <신설 2020.09.01.>

제13조 (원격수업관리위원회) ① 원격수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질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운영한다.

②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부처장, 산학부처장, 기획부처장, 종합정보지원실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으로는 2인의 학생대표와 3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원격수업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2. 원격수업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
3. 원격수업의 운영과 질관리에 관한 사항
4. 기타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<신설 2020.09.01.>

제14조 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9.01.>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문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도까지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산업체 위탁생은 총 20학점 이내(3년제 28학점)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도까지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산업체 위탁생은 2년제는 총 20학점, 3년제는 총 28학점까지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

②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5항 및 제8조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